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(제 회)	

주 택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현미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

법 제 처 심 사 를 마 칩

1. 의결주문
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주택조합 및 재개발·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총회개최 등 집단모임으로 코로나19의 감염이 우려되므로,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조합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·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9개월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○○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통령령 제30178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개월”을 “9개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대통령령 제30178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(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<u>6개월</u>이 경과하기 전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1. · 2. (생략)	대통령령 제30178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(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) ----- ----- ----- <u>9개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